

국민연금현황

— 연금급여를 중심으로 —

남광성*

I. 서론	1. 개요
1. 적용	2. 현황
2. 재정	Ⅲ. 맺음말
Ⅱ. 연금급여	

I. 서론

근대에 이르러 국민의 생존권보장이 국가·사회의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도 국민의 생활권보장,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등이 명시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생활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장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소득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공적연금제도라 볼 수 있다.

기아로 부터의 해방을 표방했던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의 경제성장을 주축으로하여 1973년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 1976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류파동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그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한편 특수직역인 공무원(1960), 군인(1960, 1963년 분리), 사립학교 교직원(1974)을 위한 연금제도는 기히시행되어 왔고, 분배욕구의 팽창과 경제외적인 요인등을 감안 1977. 7.에는 사회보험으로서의 단기보험인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되었고 그 시행 12년이 지난시점에 전국민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1986년 사회복지확충계획에 따라 동년 12. 31. 전술한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 전면 개정하여 1988. 1. 1.부터 10인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공무원등 특수직역 제외), 10인미만 사업장종사자와 일반국민은 임의가입형태로 처음 실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국민의 부상, 노령, 질병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 신체적

* 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심사부장

변화에 따른 치유, 보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급여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의료보험제도와 그 목적이 유사하지만 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생활의 보장이 추가되고 의료보험은 단기적인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이 추가되어서 상호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제도는 모두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으며 그 관리체계나 의사결정과정등은 유사하지만 그 관리방식은 국민연금은 단일보험자관리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료보험은 3자관계에, 그리고 국민연금은 쌍방관계에 입각한 관리체계라고도 볼 수 있다.

1. 적용대상

사회보험의 4가지 차원중 할당(Allocation)에 해당하는 자격의 적용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 의료보험에서는 피보험자로 호칭된다.

국민연금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가입대상이 되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3월미만의 일용근로자등은 제외되며 그 이외의 국민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될 수 있는데,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당연적용되며, 주한 외국기관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고, 또 지점, 대리점, 출장소를 두는 경우도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되게 된다.

당연적용사업장이외의 사업장근로자의 경우도 사용자가 당해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frac{2}{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장을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의 가입자수가 감소하여 10인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가입자이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가입자 자격이 18세이상 60세미만이지만 수급권 측면에서 볼때는 출생에서 18세까지, 그리고 60세이상 사망까지 연관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관계된다.

사용자의 경우는 의료보험에서는 임의적용대상이지만 국민연금에서는 당연적용대상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기업에 종사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의료보험에서와 같이 국민연금에서도 당연적용의 의미가 강제적용의 의미와

일치하느냐?에 대한 의견의 일치점 모색이 미흡하고 또 권장적 강제의 의미란 측면에서 그 불이행에 상응한 법적 제재조치도 충분히 뒤따른다고 보기 어렵다. 당연적용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을, 의료보험에서는 개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납부등의 의무는 공히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그 의무규정이 국민연금에서는 법정사항으로, 의료보험에서는 규칙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당연적용이란 용어와 관련 의료보험에서는 집합적인 선별주의에 의해 10여년 이상 전국민 적용이 늦추어져 왔고 국민연금에서도 10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이 당연적용되고 있으나 사회보험에서의 강제성이 권장적 강제로서 당연적용의 대상이 법령의 규정사항인 신고·납부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그 대응적 규제가 적절히 수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당연적용과 그 신고에 관한 규정이 국민연금의 경우 다같이 법정 사항인 바, 절차규정으로 볼 수 있는 신고의 유무가 당연적용이란 조항을 기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해석에도 상당한 이견이 있다. 즉 신고행위가 없는 경우 당연적용이 되지 않게 되면 신고의무자의 해태가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당연적용을 우위로 해석하면 보험자와 정부의 주관하에 강제적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법정 해당시점으로 소급하여 가입자를 적용시켜야 하는 바, 특히 직장 이동율이 높은 사업장가입자의 추적,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금자적을 취득한 연도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가입자의 경우 1.99%가 증가되었는데 지역가입자가 3배, 임의계속가입자가 4배 가량 증가되었고 임의적용가입자도 약 2배 증가되어 총 88,000여명이 순증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약 10만명 추정)가 미적용되고 있다.

(표 1) 연도별 가입자 현황

(명, %)

	계	당연적용	임의적용	지 역	임의계속
1988	4,432,695	4,421,081	9,958	1,370	286
	100	99.74	0.22	0.03	0.01
1989	4,520,948	4,496,650	19,030	4,036	1,232
	100	99.46	0.42	0.09	0.03

※ 국민연금통계연보 및 내부자료

사업장의 경우는 <표 2>와 같이 총 4,300여 개소가 증가했고 임의적용사업장도 많이 증가했으나 앞서서와 같이 일부당연적용사업장(약 5,000여개소 추정)이 미적용되고 있다.

<표 2> 연도별 적용사업장 현황 (개소, %)

	계	당연적용	임의적용
1988	58,583	57,345	1,238
	100	97.89	2.11
1989	62,952	60,809	2,143
	100	97.15	3.40

※ 국민연금통계연보 및 내부자료

1988년 기준 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53등급을 6계급으로 균분한 가입자 분포 비율은 <표 3>과 같이

<표 3> 표준보수등급구간별 가입자 분포 (명, %)

등급구간	계	1-9	10-18	19-27	28-36	37-45	46-53
가입자수	4,432,695	379,643	1,194,450	1,580,252	858,364	324,476	95,510
구성비	100	8.56	26.95	35.65	19.36	7.31	2.15

※ 국민연금통계 연보

약 2/3가 10-27등급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등급인 27등급을 중심으로 보면 26등급(410,000 기준)이하가 약 3,020천명으로 68%에 해당된다.

연령, 성별로 보면 <표 4>와 같이 45세미만이 87.2%로서 특례노령연금 해당자

<표 4> 연령별, 성별 가입자 분포 (명, %)

구분	계	18-24	25-34	35-44	45-54	55+
계	4,432,695	1,204,001	1,766,861	894,090	495,070	72,673
	100	27.16	39.86	20.17	11.17	1.63
남	3,076,928	407,011	1,515,972	721,881	376,441	55,623
	100	13.23	49.25	23.44	12.22	1.79
여	1,355,767	796,990	250,889	172,209	118,629	17,050
	100	58.78	18.51	12.70	8.75	1.26

※ 국민연금통계 연보

는 567천여명에 해당되고 60세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도 286명이나 된다.

여성은 약 30.5%이고 이중 10%에 해당되는 136천여명이 특례노령연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60세이상 가입여성도 25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아서는 <표 5>와 같이 1차산업 종사자는 2.32%이고 제조업이 절대다수인 55.3%

〈표 5〉 업종별 가입자 분포 (명, %)

구분	계	농·어·임·광	제조·건설	운수·철도·통신·전기·수도·가스	상·숙박·음식	금융·사회·서비스	기타
가입자수	4,432,269	102,840	2,608,192	453,724	230,476	714,064	323,399
	100	2.32	58.84	10.22	5.19	16.11	7.29

※ 국민연금통계 연보

이고 3차산업이라 볼 수 있는 금융업등의 종사자가 거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제도상의 자격은 수급권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수급권의 취득에는 현실문제의 해결능력이 미흡한 요보호자(needy)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래에 발생할 어떤 위험에 대처노력이 가능한 자로 국한되는지의 문제는 거의가 구분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 요보호자와 자립가능자의 경계선에 처한, 나아가서 사실상 경계선에서 보다 요보호자에 가까운 계층까지 사회보험으로 흡수시키려는 경향이 작지아니하다.

또한 사회보험에서의 수급권은 상용적인 의무의 이행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무이행의 능력이 있느냐?가 자격구분의 관건이 되며, 이러한 능력의 판단이 객관적 기준이나 제3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와 다소 능력이 미흡하여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이행될 수 있고 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접근이 능력에 따른 공평성의 제고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기회의 형평성도 제고하며 정책의 대응성 신장 및 그 실행가능성 증대 또한 가능하게 하여 사회보장의 근본목적인 사회정의구현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재정

사회보험에서의 재원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양출제입원칙에 의거 적용자가 부담하는 부담액(보험료, 각출료)으로 조달되고 그 구성은 강제적인 공권력 개입에 연계된 국고보상 또는 국고지원과 과실등이다.

국민연금에서의 연금재원은 보험자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국

고부담금 중의 잉여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각출료, 기금운용수익금 및 적립금으로 조달된다.

각출료는 가입자(및 사용자)로 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징수하는데 사업장 가입자와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전년도 당해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중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출하는 등급표에 의한 표준보수월액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른 3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출료로 납부하되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반분하여 부담하고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한다. 표준보수월액등급은 1등급 70,000원 부터 53등급, 2,000,000원을 상한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표준소득월액에 의해 각출료 전액을 납부하는데 표준소득월액은 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이러한 전년도 기준의 등급은 4월 부터 그 익년 3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1993년 부터 1997년까지는 각출료율을 40/1,000으로 하고 퇴직금에서 전환하여 매월 표준보수월액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출료에 포함,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 또는 표준보수월액의 60/1,000을 납부하게 되며 1998년 이후는 퇴직전환금의 비율이 표준보수월액의 30/1,000에 해당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만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또는 표준보수월액의 90/1,000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장가입자의 각출료는 사용자가 지급할 매월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그 익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은 각출료, 기금운용수익, 적립금, 공단의 결산잉여금으로 조성되고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수익성증대를 조화시키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은 예입 및 금전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 투자신탁 및 수익증권매입, 보증증권의 매입,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사업등과 국민연금사업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상장주식의 매입, 기타 1년 만기 정기예금이 자을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계리방법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신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경제기획원장관, 부위원장을 보사부장관으로 하고 재무·농수산·상공·노동

부장관과 사용자대표·가입자대표·수급권자대표·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동위원회는 매년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등에 대한 차기년도의 기금운용지침을 매년 4월 말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기금운영지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라 월별로 관리 운영한다. 그 결과는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의 경제분야 일간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기금조성을 위한 접근방식을 보면 아래와 같다.¹⁾

1) 적립식

(1) 내용분류

① 통합보험료 방식

가입자·적용자들의 적용대상각출금을 중심으로 수지균형을 이루도록 보험료율을 정하는 재정운용방식

a. 개방형 : 새로 가입자가 될 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

b. 폐쇄형 : 현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모형

② 가입연령 방식

새로이 가입하는 자를 제도의 표준적인 가입자로 간주하여 이러한 자를 대상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이것을 제도의 표준적 보험료율로 하는 운용방식.

이 경우, 표준적 가입자 이외의 가입자는 별도의 보험료율을 정하여 일정기간내에 부족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이고, 기업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식

③ 단위적립 방식(Unit Credit Method)

연금액이 가입기간에 정비례하는 경우 가입기간 단위마다 그 기간내에 누적되는 적립금을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

(2) 접근방식 분류

① 고정각출 재정계획

재정수입 측면에서 가입자 보수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 개인 계정에 적립하여 퇴직연령에 달할 때 연금급여를 고용주 및 피용자 각출료 총액과 그 이식의 합을 기초로 급여하는 방식

1) 국민복지연금의 재정수지 추계 및 재정분석, KDI, 1985, pp. 19-25.

② 고정급여 재정계획

사적연금제도 방식하에서는 지출(급여)에 중심을 두어야 하므로 급여산식(benefit formula)에 의해 급여부채(liability for benefit)와 재정수입(requirement)의 균형이 모색되는데, 이러한 고정급여산식(defined benefit formula, fixed formula or fixed benefit)은 비례급여산식(unit benefit percentage formula)에 의한 비례급여는 매년의 산정보수를 가입자의 전근무 경력에 대한 연평균보수로 환산(career averaged approach)하거나 퇴직전 몇년간의 연평균보수(final average salary approach)를 산출하여 기준으로 하는 방식.

고정급여(flat benefit plan)는 모든 퇴직자의 동일급여 또는 가입연수비례만을 반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식임.

③ 공적연금에서의 적립방식

장래에 증대될 지출에 대비하여 미래에 큰 수준으로 변화하지 않을 보험료를 정해 재정운용하는 방식으로 공평부담, 가입자 평생저축유도, 재투자자본형성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초기의 부담능력 한계성, 장래지출예측의 복잡, 경제적, 인구학적 변수에 의한 영향으로 가변성을 지니고 있음.

2) 수정적립 방식

평준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담능력의 제약상 보다 낮은 요율을 과하게 되고, 적립부족분을 후세대 가입자 부담으로 하는 방식

3) 부과 방식

단기적 일정 기간중에 지출할 급여액을 그 기간내의 보험료의 수입에 의해 충당하도록 계획하는 재정운용방식으로 실질가치 유지문제가 없고, 장기추계가 불필요하며, 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부담의 불공평과 개인의 노후를 위한 저축유인이 없음.

4) 수정부과 방식

어느 정도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그 과실을 수입으로 고려한 부과방식의 재정운용 계획으로 예로서 10-20년 정도의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내의 수지균형이 취해지도록 보험료율을 정하는 방식

이러한 국민연금은 기여에 대한 보상원칙에 따른 연금제도를 실시하되 다음을 기본방향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²⁾

- ① 국민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기본생계유지의 유지
- ② 소득의 재분배기능 보유
- ③ 장기적인 재정안정성 제고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파급효과, KDI, 1986, pp. 97-100.

④ 적립식에서 수정방식, 부과방식으로 전환

⑤ 적용가능한 계층부터 점진적 확대 실시

위의 원칙에 입각한 수정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각출료 징수현황은 아래 <표 6>과 같이 2개년도에 12,252억원의 각출료가 징수되었다.

표 6 연도별 각출료 징수현황 (억원, %)

	대상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1988	5,610	5,560	58	98.97
1989	6,784	6,692	92	98.64

주: 1) 1988년도는 연체금 포함
2) 1989년도는 수납기준 잠정치임

이러한 각출료를 중심으로한 연금기금조성현황을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표 7>과 같이 총 1,316,609백만원이 조성되었는데 운영수익도 1,416억원에 이르고

표 7 연도별 국민연금기금조성 현황 (백만원)

	계	각출료	경상이익	비고
1988	536,752	508,718	28,034	
1989	779,857	667,145	112,712	
계	1,316,609	1,175,863	141,686	

※ 국민연금 결산자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정적립방식의 기초위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있고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말까지 1조 3천억이상의 기금이 마련되고 있어서 적용대상의 연령구성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20년 정도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겠지만 급여지급이 제 제도에 이르면 부담방식이 상이해져야만 할 것이다.

II. 연금급여

1. 개요

사회보험의 목적은 필요시에 급여를 받는 것이고 급여의 필요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급여이다. 그러나 생사병노의 사고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삶의

과정이고 따라서 출생, 질병, 노약, 사망이란 위험에 대처할 필요는 모두에게 있고, 그 필요의 충족이 개인, 가족, 시장경제라는 메카니즘으로서는 불충분하기에 집단, 사회, 국가가 관여하고 나아가 그 구성원인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가 국가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은 물론 현재의 성취를 위한 과거의 기여를 긍정하고 상부상조하는 정의와 인도정신을 실체화하는 방안으로서 위험의 분산을 통한 개인생활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재도가 사회보험이며, 이중 건강의 이상에 대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의료보험제도이고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연금제도이다.

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의 효력발생은 단기보험인 의료보험의 경우는 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수급권이 발생하고 또 자격을 취득한자의 거의 모두가 수급권을 갖는 것이지만, 장기보험인 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이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동시에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상이한 경우가 적지않다.

연금급여의 근간이 되는 가입기간의 계산은 월을 단위로 하고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하되 동월에 취득과 상실이 일어난 경우는 이를 1월로 간주하고 기간의 계산에 있어 각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자격의 득실이 계속되었거나 가입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전·후기간을 합산한다.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으로 대별되는데 이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산정되고,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수급권자에게는 국민연금수급증서가 교부된다).

기본연금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금액을 계산한다.

$$\frac{2,400}{1,000} (A+B) \left\{ 1 + \frac{50(n-20)}{1,000} \right\} = \text{기본연금급여 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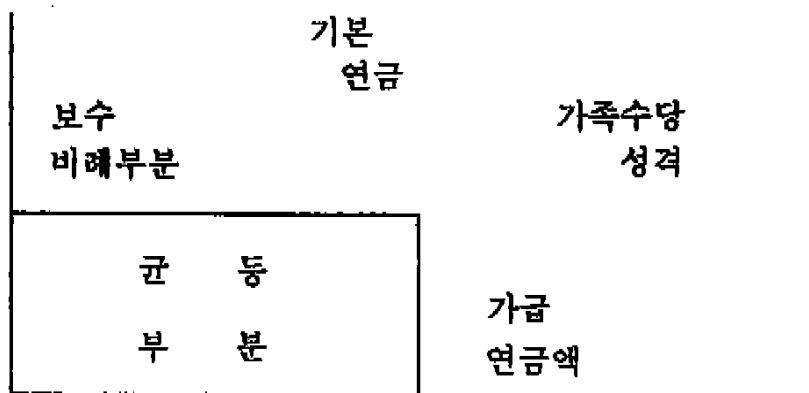
이 경우 2,400/1,000은 가입기간이 20년일 경우 연금액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로서 A=B일때 연금의 월액은 월보수액의 40%에 달하게 되어 ILO의 기준에도 유사하게 된다.

A는 연금수급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전사업장 가입자의 평균보수월액이고,

B는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보수(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월액의 평균액인데, 평균보수월액의 변동율을 반영, 현가로 환산한 후 평균액을 산출하

고 그 산출금액에 $750/1,000$ 을 승하여 결정한 금액이다. “ $50/1,000$ ”은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때 1년에 대한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이고, “ $n-20$ ”은 20년 초과 년수를 의미하며 $n > 20$ 이 된다.

가급연금액은 정액으로 하되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증 배우자(연 60,000원), 18세미만 또는 장해 2등급 이상인자인 자녀 2인(연 1인당 36,000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60세이상 또는 장해 2등급 이상인 부모(연 1인당 36,000원)등이 있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며,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재분배와 기여비를 조화시키고, 가족수당을 가미한 제도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하여, 위 산식중 가입기간중 표준보수(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가입기간중의 평균보수월액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과, 연금수급개시후에는 앞의 산식 A와 B모두에 전국소비자들이 변동율로 기본연금에서의 같이 조정하여 연금액을 산출·대처한다.

보험의 중복급여 배제원칙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는 연금의 $1/2$ 을 감하여 병급조정하고 어느 경우에도 연금의 월지금액이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5년간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을 상회하지 못하며, 수급권자에게 2이상의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 중 하나의 수급권만 선택하도록 하고, 제 3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 범위안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연금급여수급권은 압류, 양도,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보호되지만, 의료보험의 경우 범죄행위 또는 고의의 사고유발, 보험자의 지시불이행, 중복급여, 사위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수급등의 경우는 의료보험급여가 제한되고 해외여행, 수감, 군복무등의 경우에는 급여가 정지되는 것과 같이 연금의 경우에서도 고의로 연금의 지급사유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연금급여가 제한되며, 수급권자의 신고 불이행, 고의의 지시불이행등의 경우는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5년간 급여를 받은 50세 미만의 처인 유족연금수급권자는 장해 2등급 이상자녀, 18세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 50세까지 급여가 정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 범위내에서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원상회복이나 원상과피의 처리를 위한 경비성 지출, 예로서 치료비, 간호비, 장제비, 가족의 손실, 교통비 등과 사고로 인하여 사고시점이후의 예상수익의 손실 즉 일실수익과는 구분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나, 민법, 관습을 따르게 되어서 모든 배상액을 상계대상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연금제도에 합목적적인 급여가 제약 받은 예가 발생되게 되어 있다.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실수익으로 한정하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도 24개월의 급여정지로서 손해배상 상계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구상권행사에 있어서도 지급된 급여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는 급여지급제도에 따라 매 분기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번잡성을 개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의료보험에서의 급여는 현물급여, 단기급여로서 업무가 종료되는 반면 연금에서는 현금급여, 장기급여로서 그 사후 관리와 장래예측에 의한 적정급여 수준유지가 상이한 것이다.

연금에서는 의료보험에서의 수급권 소멸과 상이한 요건이 있는 바, 노령연금에서는 사망하여도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장해연금의 경우는 장해등급 4급이하에 해당되어 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3급 이상의 경우와 달리 그 장해정도의 변화가 있다하여도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며, 유족연금의 경우는 수급권자의 사망,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이나 출가, 장해 2등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18세 도달, 장해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된자가 장해등급 2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이외의 자로서 수급권을 가진 경우, 가입자나 가입하였던 자의 사망 당시 태아가 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된다.

반환일시금의 경우는 수급권자가 가입자로 되거나 장해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소멸한다.

가입연금의 경우는 수급권자가 되거나,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관계의 종료, 배우자의 이혼, 자녀로서 18세이상인 된 때, 장해로 인한 대상자가 장해 2등급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때 수급권이 없게 된다.

2 현 황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자가 60세에 달한 때부터(깁내 종사하는 광부,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은 55세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완전노령연금과 60세에 달하여도 그 가입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충족하고 보수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미만의 재직자(광부와 부원은 55세이상 60세미만)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재직자노령연금, 그리고 가입기간 20년을 충족하고 55세이상인 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text{감액노령연금} = \frac{2,400}{1,000} (A+B) * \left| \frac{725}{1,000} + \frac{50(n-15)}{1,000} \right|$$

+가급연금액으로 계산되는데 n은 가입기간 15년 초과년수로 $15 \leq n < 20$ 에 해당 되고, $725/1,000$ 는 가입기간 15년의 경우 감액되는 비율이다.

$$\text{재직자노령연금} = \frac{2,400}{1,000} (A+B) * \frac{750+50(n-60)}{1,000}$$

+가급연금액으로 n은 가입자 연령인데, $60 \leq n \leq 64$ 이다.

다만, 부원과 깁내 광부 같은 특수직종근로자는 (n-60)이 (n-55)로 되고 $55 \leq n \leq 59$ 로 된다.

$$\text{조기노령연금} = \frac{2,400}{1,000} (A+B) * \frac{750+50(n-55)}{1,000}$$

+가급연금액으로서 $55 \leq n \leq 59$ 이다.

45세이상인 가입기간 15년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법부칙 제 5조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연금액은

$$\text{기본연금액} * \left| \frac{250+50(n-5)}{1,000} \right| + \text{가급연금액}$$

$5 \leq n < 15$ 으로서 최소가입기간 5년을 충족하면 기본연금액의 $250/1,000$ 을 받게 되고 매 1년 초과마다 기본연금액의 $50/1,000$ 을 가산하게 되어 14년에 달하면 기본연금액의 $700/1,000$ 에 달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발생은 될 수 없는 것이다.

2) 장애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질병에 의한 장애는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되지 아니하면 초진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가입중 부상으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자는 가입기간이 1년이 되는 때 부터 연금을 지급하며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연금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장애등급을 1,2,3,4급으로 구분하며, 신체부위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부위로 볼 때 1급은 신체기능이 노동불능의 상태이며, 상시 개호를 요하는 정도의 장애상태로서

$$\frac{2,400}{1,000} (A+B) \left\{ 1 + \frac{50(n-20)}{1,000} \right\} + \text{가급연금을 장애연금으로 하고}$$

(기본연금액)

2급은 신체기능상 노동에 있어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상태로서

$$\text{기본연금액} \times \frac{800}{1,000} + \text{가급연금액,}$$

3급은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상태로서

$$\text{기본연금액} \times \frac{600}{1,000} + \text{가급연금액,}$$

그리고 4급은 신체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상태로서 기본연금액의 1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장애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은 이를 자문의사의 의견을 들어 등급을 결정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1989년 부터 수급요건이 충족되게 되는데 <표 8>과 같이 총 69건 53,863천원이 지급되었다.

<표 8> 장애연금지급 현황

(건, 천원)

	계	1급	2급	3급	4급
건수	69	4	17	21	27
금액	53,863	4,431	7,870	6,831	34,730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이중 4급 해당자는 39%, 27건으로 일시보상금으로서 기본연금액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건당 평균 1,286천원이 지급된 것이다. 장해연금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중복되면 1/2을 감액지급하고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청구건수 85건중 16건은 지급공제된 건수로 나타났다. 1989년에 장해심사 자문회의의 9회 개최와 개별자문등을 통하여 심사결정한 내용은 <표 9>와 같이 총 223건을 처리하였는바, 그중 장해연금에 관한 것이 210건으로 94%에 달하고 급외로 결정된 건수도 39%에 달하였다.

(표 9) 장해심사결정 현황 (건)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급외등
계	223	11	39	38	47	88
장해연금	210	8	34	36	45	87
유족연금	5	2	2	-	1	-
기 타	8	1	3	2	1	1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위의 결정내용을 부위별로 보면 <표 10>과 같이 팔, 다리등 특수부위가 대

(표 10)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심사결정 현황 (건)

	계	호흡기	간	신장	눈	귀	팔	다리	신경·정신	척추
계	223	2	1	3	15	6	123	35	10	28
1급	11	-	-	-	-	-	-	8	3	-
2급	39	-	1	-	1	1	23	8	1	4
3급	38	-	-	-	-	1	28	-	1	8
4급	47	1	-	-	12	-	25	5	1	3
급외등	88	1	-	3	2	4	47	14	4	13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부분을 점유하며 그중 상·하지가 주종을 이루고 가장 많은 상지의 경우도 손과 관련된 건수가 43% 54건으로 대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외등은 결정상 등급외, 자료미비, 장해고정시기의 대기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심사결정건수와 연금지급건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3자 행위에 의한 지급사유발생의 지급정지와 유족, 가급연금의 분류, 연금지급시점과의

시간차이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통계에 의한 산·재 발생건수에 비할때 청구자체가 상당히 저조하지만 가입기간 총족, 장해고정의 시간소요등을 감안하면 장해연금의 청구경향은 급상승하리라 본다.

장해연금에서 가입중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법문해석과 실제 질병의 특수성, 개인성과 직무관련등이 복합되어 판단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특히, 질병의 경우는 그 발생시점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해다가 만성질환, 악성신생물 등 발생시기 확인은 연금제도 시행초기에는 더욱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질병과 부상관계의 불명확, 장해고정과 질병의 진행여부 문제, 장해자의 감각과 전문가의 견해의 차이발생 등 실무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장해등급의 4등급 분류에 대한 이견도 없지 아니하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었던 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 그리고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 1년이상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textcircled{1} 1 \leq \text{가입기간} < 10\text{년} \rightarrow \text{기본연금액} \times \frac{400}{1,000} + \text{가급연금액}$$

$$\textcircled{2} 20\text{년 가입기간} \geq 10\text{년} \rightarrow \text{기본연금액} \times \frac{500}{1,000} + \text{가급연금액}$$

$$\textcircled{3} \text{가입기간} \geq 20\text{년} \rightarrow \text{기본연금액} \times \frac{600}{1,000} + \text{가급연금액}$$

유족의 범위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하되

- ①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는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인자에 한함
- ②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인자에 한함
-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한함

- ④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한함
-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한함

위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배우자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면 자녀에게 지급하며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때는 균분 지급한다.

유족연금도 장애연금과 같이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989년 부터 유족연금급여가 실시되었다.

1989년도 유족연금 지급현황은 <표 11>과 같이 1,756건에 753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청구기준에 의하면 1980건이나 이중 224건은 제 3자 행위에 의한 손해

(표 11) 유족연금지급 현황

(명, 천원)

	계	1/4	2/4	3/4	4/4
건 수	1,756	114	452	283	907
금 액	753,359	11,968	119,871	181,201	400,317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배상 등으로 공제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표에서 건수는 실건수(인원)이고 금액은 분기별 누계 개념이다. 유족연금에서는 법 제63조 제 1항에 의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하계끔 되어 있음으로서 사실상의 생계유지관계입증, 사실혼의 배우자 문제, 이혼한 처의 후견인문제등에 있어 호적법, 민법, 사회통념간에 상당한 이견이 경우에 따라서 대두되게 되며, 필요에 따른 급여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양자가 없는 가입자의 사망시에는 반환일시금을 위시한 모든 급여가 정지되게 되는데 대한 이견도 있다.

나아가서, 배우자인 처로서 5년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18세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가 없는 때, 또는 이들과 생계를 달리하는 때에는 50세까지 유족연금이 지급정지되는데 대한 당사자 능력미반영이란 이견도 있다.

1989년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매일경제, '90. 2. 19 15면) 산업재해발생율이 2.0%, 134천여명으로 나타났고 사망 또한 1988년에 만명당 3.4명, 1989년에 2.6명으로 나타나서 산·재사고 이외의 사망을 감안한다면 향후 유족연금의 청

구는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4) 반환일시금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음의 경우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①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②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④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자로 국적 상실, 해외 이주시

반환일시금액의 이자 산정은 월수에 의하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고, 계속하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계속가입기간)중의 기여금 및 퇴직금 전환금은 3년만기 재형저축이자율, 부담금에 대하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계속가입기간중 각출료의 2/3에는 3년만기 재형저축이자율, 나머지 1/3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원리합계액으로 한다('88.1.1-'92.12.31의 각출료는 1/2씩 적용). 다만, 가입기간 15년미만인 자로서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 또는 1년이 경과하기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는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가산율은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적용하되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 60세도달의 경우는 당해 월까지만 가산기간을 인정한다.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 순위는 유족연금의 유족범위와 청구순위를 원용하게 되어 있다.

자격상실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자격을 재 취득한 경우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게 되고 분납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자가 계산되는데 이자계산기간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자격 재취득월의 전월까지이고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된다.

반환일시금은 그 사유에 따라 즉시지급, 1년대기후 지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연도별 지급현황은 <표 12>와 같이 총 60,650건에 5,527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연도별비교에 있어 60세도달은 약 280%가 증가했으나 사망의 경우는 6% 내외가 증가되었으며 해외이주는 560% 가량 건수에서 순증되었다.

1년 경과자도 1989년도에는 그 청구가 적었으나 연도말에 가까울수록 폭증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1989기준 자격

〈표 12〉 반환일시금 지급현황

(건, 백만원)

		계	60세도달	사 망	국외이주	1년경과
계	건수	60,650	7,272	2,977	1,306	49,095
	금액	5,527	1,326	296	319	3,596
1988	건수	3,128	1,503	1,446	179	-
	금액	300	156	117	26	-
1989	건수	57,522	5,769	1,531	1,127	49,095
	금액	5,227	1,169	178	282	3,596

※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신규취득이 1,935천건 상실이 1,847천건으로 재취업율의 정확한 산정이 미산출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청구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III. 맺음말

1989년 까지의 연금액 총계는 〈표 13〉과 같이 총 62,475건에 6,335백만원이

〈표 13〉 국민연금급여 총계

(건, 백만원)

		계	장 해 연 금	유 족 연 금	반 환 일 시 금
계	건수	62,475	69	1,756	60,650
	금액	6,335	53	753	5,527
1988	건수	3,128	-	-	3,128
	금액	300	-	-	300
1989	건수	59,347	69	1,756	57,522
	금액	6,034	53	753	5,227

집행되어 조성된 기금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금액이지만 향후 급여지급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급여에 관련하여 볼 때 현재 needy상태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급여 여부에 따라 공평성과 형평성의 상치, 대응성과 실현성의 상치문제가 대두되며, 수급요건인 20년 가입기간 문제도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41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급여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의 현상의 지난시간 즉 과거의 산물이나? 의 여부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회통념 및 사회정의와도 유관한 문제로 보인다.

나아가 연금급여가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나? 의 문제인데, 20년 기간을 충족한 경우도 평균임금의 40%수준으로 급여가 결정될 때 과연 생존이 아닌 생활의 보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소득의 성장과 생활양태의 변화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의 문제도 상정된다.

또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경우도 세제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18세 이상의 경우 연금이 중단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현재의 조류와 실제의 취업여건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의 소멸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가급연금의 경우도 1인당 국민소득 4,000\$이 운위되는 시점에서 물가양동이 반영되게는 되어 있지만 연간 36,000원(\$54.00)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점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반환일시금을 연금급여로 볼 것인지 여부도 또한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이는 각출료의 원리금 반환에 한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원리금의 계산방법에 있어서도 단리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른 이의 제기도 가능한 것이다.

중복급여의 지양을 위한 손해배상과의 연계는 전술한 바와 같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만을 병급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타 사보험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며, 급여 제외대상(일정액 이상의 소득과 자산보유자)의 설정여부 또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연금급여에서의 공평성, 형평성 및 대응성이나 실현성에 대한 많은 검토가 요구 되고 있다.

이상에 약속한 내용이 모두 검토 보완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노력이 현재 강구되고 있어 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사회보장의 확충이 이루어질 것은 확신하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의 경주를 촉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 내용은 사건임을 첨언함)